

李 宗 一	鄭 然 宇	金 相 烈
李 康 泌	金 東 暉	蔡 雲 錫
尹 東 鉉	洪 吉 杓	田 炳 萬
李 仁 求	尹 正 鏞	權 五 範

○ 出席公務員

區 廳 長	李 慶 培
副 區 廳 長	潘 尙 均
總 務 局 長	河 永 基
財 務 局 長	池 榮 昌
市 民 局 長	姜 信 在
都 市 整 備 局 長	申 水 木
建 設 局 長	姜 昌 求
保 健 所 長	孟 時 仙
總 務 課 長	李 春 基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10. 27.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7. 26. 마포구  
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3. 8. 2.

다. 상정일자

- 제18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3. 8. 9.)

상정, 보류

- 제19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3. 10. 27.)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제2980호, 1993. 1. 13)가 개정  
됨에 따라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조례(제  
158호, '91. 8. 1)를 시립운동시설 기준  
요금으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정구장 운  
영관리를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별표1) 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

(평일주간기준)

- 체육경기 : 1면당 4,400원→8,000원으로

상향조정

- 체육이외의 행사 : 44,000원→80,000원으로

로 상향조정

(별표2) 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

(평일 2시간기준)

- 1면당 사용료 1,960원→3,400원으로 상

향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지  
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체육의 진흥  
을 도모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는 지  
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유지보수 의  
무를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설치관리를 의  
무화하고 있음.

○ 동조례(안)은 서울특별시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조례 제2,980호, 1993. 1. 13)의 개정에 따라 마포구운영 테니스장 사용료를 시립운동시설 기준요금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 향후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키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의 확장 및 활용도 제고등 구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망원동 테니스장은 일부 사람만 이용을 하고 일반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답변요지(정수용 생활체육과장) : 그것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현지확인도 하였으며 우리 직원들을 매일 현장에 내보내 집중지도를 하고 있어 현재는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요지(박주서 위원) : 망원동 테니스장의 현재 연간수입은 얼마나 되나?

○ 답변요지(정수용 생활체육과장) : 92년도 기준 2,770,020원 적자임.

○ 질의요지(조희태 위원) : 망원동 테니스장의 사용료 수입은 구수입인가?

○ 답변요지(정수용 생활체육과장) : 아님. 연합회에 위탁을 준것이므로 사용료 수입은 연합회 수입이며 연합회에서 인건비, 수리 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
----------	-----

제출년월일 : 1993년 7월 26일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제2980호, 1993. 1. 13)가 개정됨

에 따라 마포구 운영 정구장 사용료 징수조례(제158호, 1991. 8. 1)를 시립운동시설 기준 요금으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정구장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함.

2. 개정 주요골자

(별표1) 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  
(평일주간기준)

○ 체육경기 : 1면당 4,400원→8,000원으로 상향조정

○ 체육이외의 행사 : 44,000원→80,000원으로 상향조정

(별표2) 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  
(평일 2시간기준)

○ 1면당 사용료 1,960원→3,400원으로 상향조정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서울특별시 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제2980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  
(평일주간 기준)중

망원동 테니스장의 체육경기란의 "면당 4,400원 기준, 4면 17,600원"을 "면당 8,000원 기준, 5면 40,000원"으로 하고 체육이외 행사란의 "44,000원"을 "80,000원"으로 한다.

<별표 2> 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  
(평일 2시간 기준)중

사용료란의 "1,960원"을 "3,400원"으로 하고 비고란의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 "월회원 사용료 발행시에는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lt;별표 1&gt;</p> <p style="text-align: center;">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 (평일주간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장 별</th> <th style="width: 45%;">체 육 경 기</th> <th style="width: 40%;">체육이외 행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망 원 동 테니스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당 4,400원 기준, 4면 17,6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4,000원</td> </tr> </tbody> </table> <p>(생략)</p> <p>&lt;별표 2&gt;</p> <p style="text-align: center;">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 (평일 2시간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기 준</th> <th style="width: 15%;">사용료</th> <th style="width: 7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960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우대자, 어린이의 연습 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할을 징수함.</li> <li>○ 학생, 군인의 연습사용료는 해당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li> <li>○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li> <li>○ 월회원 사용료 발행시에는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li> <li>○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li> </ul> </td> </tr> </tbody> </table>	구 장 별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망 원 동 테니스장	면당 4,400원 기준, 4면 17,600원	44,000원	기 준	사용료	비 고	1면당	1,96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우대자, 어린이의 연습 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할을 징수함.</li> <li>○ 학생, 군인의 연습사용료는 해당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li> <li>○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li> <li>○ 월회원 사용료 발행시에는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li> <li>○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li> </ul>	<p>&lt;별표 1&gt;</p> <p style="text-align: center;">테니스장 기본전용사용료 (평일주간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장 별</th> <th style="width: 45%;">체 육 경 기</th> <th style="width: 40%;">체육이외 행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망 원 동 테니스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당 8,000원 기준, 5면 4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원</td> </tr> </tbody> </table> <p>(현행과 같음)</p> <p>&lt;별표 2&gt;</p> <p style="text-align: center;">테니스장 개인연습사용료 (평일 2시간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기 준</th> <th style="width: 15%;">사용료</th> <th style="width: 7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3,400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li>○ .....</li> <li>○ .....</li> <li style="text-align: center;">[삭제]</li> <li style="text-align: center;">[삭제]</li> <li>○ .....</li> <li>○ .....</li> </ul> </td> </tr> </tbody> </table>	구 장 별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망 원 동 테니스장	면당 8,000원 기준, 5면 40,000원	80,000원	기 준	사용료	비 고	1면당	3,4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li>○ .....</li> <li>○ .....</li> <li style="text-align: center;">[삭제]</li> <li style="text-align: center;">[삭제]</li> <li>○ .....</li> <li>○ .....</li> </ul>
구 장 별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망 원 동 테니스장	면당 4,400원 기준, 4면 17,600원	44,000원																							
기 준	사용료	비 고																							
1면당	1,96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우대자, 어린이의 연습 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할을 징수함.</li> <li>○ 학생, 군인의 연습사용료는 해당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li> <li>○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li> <li>○ 월회원 사용료 발행시에는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li> <li>○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li> </ul>																							
구 장 별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망 원 동 테니스장	면당 8,000원 기준, 5면 40,000원	80,000원																							
기 준	사용료	비 고																							
1면당	3,4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li>○ .....</li> <li>○ .....</li> <li style="text-align: center;">[삭제]</li> <li style="text-align: center;">[삭제]</li> <li>○ .....</li> <li>○ .....</li> </ul>																							